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장 문 혁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보건사업과장)	일 자	질의	2015년 12월 01일
			답변	2015년 12월 02일
회 의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 야간 및 휴일근무 관련근거 제출

답변내용

○ 보건복지부 2015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관련

-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

공중보건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또한 공휴일에 시간외근무,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 대체 휴무를 줄 경우 외래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수당지급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장 문 혁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보건사업과장)	일 자	질의	2015년 12월 01일
			답변	2015년 12월 02일
회 의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관련근거 2015년「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발췌

(3)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휴가 운영,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보수지급일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할 수 있다.

(4)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정상근무일은 휴무일에 근무한 날로부터 가까운 날짜로 하되 대체휴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근무기관의 장이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대체휴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무상황관리

(1)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2)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